

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제 안 설 명

- 의안번호 제1128호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- 본 조례안은
 -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를 따라 조례의 ‘부랑인과 노숙인’을 ‘노숙인 등’으로 ‘부랑인과 노숙인 보호시설’을 ‘노숙인시설’로 조례의 용어를 정비(안 제2조 및 제5조)하고,
 -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실·본부·국 명칭 변경, 사회복지시설 운영 주관부서 정비, 사회복지시설 소재지 등 현행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-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-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